



법무법인(유한)태평양  
03161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T 02 3404 0000 F 02 3404 0001 bkl@bkl.co.kr

2020. 9. 3.

태평양: 20-09-862-1

수 신: 대한한돈협회

참 조: 조진현 부장님, 김하제 주임님 / 농가지원부

제 목: 악취규제 등 관련 법령 검토

위 제목 기재의 질의에 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I.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 1. 사안의 개요

귀회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고 한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한돈 생산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입니다.

귀회는 양돈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 2. 질의의 요지

##### (1) 축사 발생 악취 관련 질의

- (가) 축사 발생 악취 관련 적용 법령
-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의 당부
- (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 측정 기준의 적정성
- (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의 요건

##### (2) 가축분뇨 액비 관련 질의

- (가)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 관련 적용 법령

## (나) 퇴·액비 부속도 기준 위반의 처벌규정 적용

## (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련 질의

(가) 변경신고 없이 처리용량의 130% 이내로 처리할 경우 적법성

(나) 재활용신고된 일일 취급량 및 생산량 이상으로 수거할 경우 적법성

## (4) 돼지 사육시설 증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관련 질의

(가) 축사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나) 막여과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

**II. 본 법무법인의 의견의 요지**

## (1) 축사 발생 악취 관련 질의

(가) 현행 법 체계상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하여 악취방지법 또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될 수 있고 각 법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기한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돼지 사육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될 경우, 가축분뇨법만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더 낮은 돼지 사육시설이 규제 필요성이 더 큰 돼지 사육시설(신고대상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단축된 개선명령 이행기한이 부여되는 모순된 결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평등권 침해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간의 체계와 목적, 정합성을 감안할 때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련된 규제는 악취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가축분뇨법령을 적용할 경우 사육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도 최대 3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 제2호 가 목 12)는 사업주에게 완전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육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종류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하여도 즉시 2개

월의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하고 나아가 위반행위가 1회라도 더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였음. 이는 사업주의 개선명령 불이행의 위법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침익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또한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을 제재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는바,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최신식 사육시설의 경우에도 부지가 협소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측정되는 사례가 있음. 또한 복합악취 측정 방식은 측정일자 별로 측정값 편차가 과도하고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탈취제, 인근 농장의 퇴비 등 다른 악취 발생요인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악취물질 측정을 병행하여 돼지 사육시설 등 특정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측정함으로써 복합악취 측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가축분뇨 액비 관련 질의

(가)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도입된 가축분뇨법 제13조의2의 입법취지 및 가축분뇨법 제규정에서 제13조의2 제1항에 기한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을 제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별표 3]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관점에서는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하기 이전에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반면, 오히려 가장 침익적인 수단인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는 고의 없이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1회의 위반만으로 바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가축분뇨법상 퇴비액비화기준 위반 형사처벌 규정은 죄질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련 질의

(가) 유사 법령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구조적·기능적 증설이나 변동 없이 단지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 또는 1일 평균 처리능력은 최종적으로 퇴비·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업무는 평일에만 진행되고 평일 중 수집·운반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재활용신고서 상의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리시설이 평일과 휴일 모두 가동되어 최종적으로 퇴비·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 이하로 유지됨. 그렇다면 특정 일자에 수집·운반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신고서 상에 기재된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4) 돼지 사육시설 증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관련 질의

(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6호 및 비고 제5호 다목의 규정 취지, 축산법 제2조 제8호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한 ‘축산시설’의 의미를 고려하면, 축사시설을 2층 이하로 증설하는 경우 축사시설에는 처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그 시설에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양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막여과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처리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변함이 없어 처리용량의 증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막여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 III. 본 법무법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

#### 1. 질의사항 (1)에 대한 의견 – 축사 발생 악취 관련

##### 가. 축사 발생 악취 관련 적용 법령

악취방지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2호 가목).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악취관리지역 내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방지시설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5호).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부득이할 경우 6개월 내에서 연장)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선명령, 악취방지법 제10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2년 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한 경우의 2차 위반, 연속하지 아니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경우의 3차 위반에 대하여 개선 완료일까지 각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9] 제2호 1) 및 2)].

한편, 돼지 사육시설(축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에도 해당합니다(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설치허가·신고를 마치고  $50m^2$  이상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이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 제9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부득이할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선명령,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내지 3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제2항, 동법 시행규

칙 제17조 [별표 7] 제2호 가목 11)].

위와 같은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의 규정을 정리하여 보면,  $50m^2$  이상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악취방지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각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내지 사용중지명령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로서 돼지 사육시설이 악취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신고대상시설로 고시되어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시설로서 공통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가 배출되는 장소, 즉 악취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악취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 곳에만 개선명령 등을 부과하면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반면 가축분뇨법은 악취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50m^2$  이상의 모든 돼지 사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또는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돼지 사육시설의 사업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없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 즉 악취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에도 적용됨에도 악취방지법보다 개선명령의 이행기한을 엄격하게 하여 단축하였습니다. 예컨대, 즉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역에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모순된 결론에 이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 제2호 가목 12)가 적용되면서, 단순한 관리기준 위반이 문제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도 1차 위반 시 사용중지명령 2개월, 2차 위반시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

있어,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됩니다.

상이한 규범간에도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가리켜 체계정당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 위와 같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되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헌법 원칙에 반할 경우, 그 규범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66 결정 참조).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돼지 사육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될 경우,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 악취방지법 또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될 수 있고 각 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한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돼지 사육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될 경우, 가축분뇨법만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더 적은 돼지 사육시설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돼지 사육시설(신고대상시설)보다 더 단축된 개선명령 이행기한이 부여되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에 관하여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으로 이원화하여 규제를 다르게 규정한 현재의 규범체계는 체계정당성,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제 대상인 악취에 대해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악취방지법 제1조), 축산시설, 도축시설, 식료품 제조시설, 담배 제조 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석유제품 가공시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폐수 처리 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및 그 밖의 시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악취 발생의 가능성

---

이 있는 시설을 모두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즉 현행 환경법령의 체계상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을 통하여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입법자의 의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법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규율을 넘어 별도로 악취관련 규제를 두거나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환경법령의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련된 규제도 악취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관리법 등 여타 배출시설 관련 환경법령에서도 악취에 대하여 별도로 개선명령 등 규제를 두지 아니하는 것은 보다 특별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에서 비록 악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악취방지법의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악취방지법과 다르게 가축분뇨법에서 별도로 규제나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의 당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어떠한 법령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에 위배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돼지 사육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내지 3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제2호 가목 11)].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의 관리기준(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 중에는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할 것”,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 의무의 성질 상 완전한 이행을 항상 담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위반의 가능성성이 상존하는 관리기준도 존재합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개선명령 위반의 경우 위반횟수가 누적되어도 3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을 최대한의 제재처분으로 정한 까닭도 위와 같이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 제2호 가목 12)가 적용되면서, 단순한 관리기준 위반이 문제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도 1차 위반시 사용중지명령 2개월, 2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최대 3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용 사용중지명령으로도 개선명령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고 또한 개선명령 불이행의 위법성과 사용중지명령의 侵益性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전제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축분뇨법 제50조 제7호) 내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3호)의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 제2호 가목 12)는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의 유지, 해충의 방지, 빗물 유입 방지 등 사업주에게 완전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육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종류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하여도 즉시 2개월의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하고 나아가 위반행위가 1회만 더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개선명령 불이행의 위법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침익적인 수단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또한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게 되는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의 불이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위와 같이 경미한 관리기준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허가취소로 제재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의 균형성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에 해당할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 측정 기준의 적정성

시·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는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1호).

복합악취의 경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없다면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판정요원이 악취 시료의 냄새를 맡고 無臭 판정을 할 때까지 시료를 희석한 배수를 산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 방식으로 측정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호, 제3호). 지정악취물질은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하여 각 악취물질 별로 특성화된 측정법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를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여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밀폐형, 액비순환, 습식세정 등 악취방지시설에 25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육시설의 경우에도 부지가 협소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측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악취 측정 방식은 측정일자 별로 편차가 과도<sup>1</sup>하고 시료 채취 지점

<sup>1</sup> 예를 들어, A농장의 경우 2020. 4.경 측정시 평균 희석배수가 101에 달하였는데, 2020.

---

인근의 탈취제, 인근 농장의 퇴비 등 다른 악취 발생요인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바<sup>2</sup>,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사업주가 상당히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전제가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 측정 방식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복합악취의 악취 시료 채취 지점은 현재와 같은 부지경계선이 아니라 악취발생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환경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합악취만을 측정할 경우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다른 악취 발생요인에서 발생한 악취를 구별할 수 없는바, 지정악취물질 측정을 병행하여 돼지 사육시설 등 특정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복합악취만을 측정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에서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역시 복합악취 측정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발생요인에서 배출된 악취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취물질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보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 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의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

6.에는 평균 희석배수가 9에 그쳤습니다.

<sup>2</sup> 현재 입법 예고된 행정기본법 제12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 제2항).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특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① 악취 관련 민원의 1년 이상 지속, ②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둘 이상 인접, ③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서 악취방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는 등 3가지 지정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질의사항 (2)에 대한 의견 – 가축분뇨 액비 관련

### 가.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 관련 적용 법령

현재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액비의 적용법률 및 규격은 판매 여부에 따라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료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액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분류됩니다(비료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이하 ‘비료공정규격’) 제4조 제6항 [별표 3] 제1호 11.). 다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비료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즉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가축분뇨발효액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축산업자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액비는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규격을 준용하면서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페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가축분뇨법 제2조 제6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에 더하여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3]에서 액비화의 기준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액비화기준에 관한 가축분뇨법 제13조의2는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써 신설되었는데, 당시의 입법취지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5조 제4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2호, 제25조 제9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 가축분뇨법의 제규정들은 모두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가축분뇨법의 규정 체계, 신법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액비의 규격에 관하여 신설된 가축분뇨법 제13조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액비의 기준을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3]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나. 퇴·액비 부속도 기준 위반의 처벌규정 적용

현재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한편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및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제49조 제2호, 제4호, 제50조 제5호,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는 행위를 하더라도, 바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사용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 개선명령을 불이행해야 비로소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합니다(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요컨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현행 가축분뇨법은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하기 이전에 개선명령을 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반면, 오히려 가장 침의적인 수단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고의 없이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1회의 위반 행위만으로 바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위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퇴비의 부숙도기준은 2020. 3. 25.부터, 액비의 부숙도기준은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 3. 25.부터, 그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 3. 25.부터 각 적용되어 비교적 최근에 적용된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부숙도 기준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농가에 배포하고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컨설팅 제도까지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이 상당히 예견되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은 위법행위와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3. 질의사항 (3)에 대한 의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련

#### 가. 변경신고 없이 처리용량의 130% 이내로 처리할 경우 적법성

가축분뇨를 1일 400킬로그램이상 재활용(퇴비·액비화)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재활용신고자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축분뇨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 이 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변경신고 없이 처리량을 증량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의 의미에 관하여 가축분뇨법이 적용된 직접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지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재활용시설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지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

---

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전까지는 가축분뇨가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바(가축분뇨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제2호 나목),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으로 증량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 관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나. 재활용신고된 일일 취급량 및 생산량 이상으로 수거할 경우 적법성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액비화)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법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수집장비, 처리시설, 저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가축분뇨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퇴비·액비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신고서에는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또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도 **1일 평균 처리능력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가축분뇨의 재활용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최종적으로 퇴비·액비화하는 과정인 점, 재활용신고의 신고서에 취급량 및 생산량을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는 1일 평균 처리<sup>3</sup>능력만을 표기하고 있는 점, 재활용신고자

---

<sup>3</sup> ‘처리’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또는 정화를 의미하고, 자원화에는 퇴비·액비화가 포함됨

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제2호 아목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퇴비·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도 퇴비·액비의 생산량과 처분량을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수집·운반량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점,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양을 미리 정하도록 한 취지는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를 취급하여 부실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 또는 1일 평균 처리능력은 최종적으로 퇴비·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회의 설명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업무는 평일에만 이루어지나 처리 업무는 평일과 휴일 모두 진행됩니다. 평일 중 수집·운반하는 가축분뇨의 양은 재활용신고서 상의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리시설은 평일과 휴일 모두 가동되므로 최종적으로 1일당 퇴비·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1일당 퇴비·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이 ‘1일 평균 취급량’ 및 ‘1일 평균 생산량’ 이하로 유지된다면, 특정 일자에 수집·운반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신고서 상에 기재된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은 최대생산량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기간, 예를 들어 퇴비의 생산주기 월 또는 년간을 기준으로 일평균 생산량 또는 취급량을 의미하므로, 특정 일자의 생산량 또는 취급량은 평균을 상회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 4. 질의사항 (4)에 대한 의견 – 돼지 사육시설 증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제4항, 제9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의 위임을 받아, 제주도 지역 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

---

니다(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제4호).

---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①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과[제13호 가목 (2)], ②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357조 및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6호)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축산업용으로 사용하는 2층 이하의 축사시설은 제외됩니다(비고 제5호 다목).

위 [별표 1] 비고 제5호는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건축물이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문언만 놓고 본다면 ‘축산업용으로 사용하는 2층 이하의 축사시설’은 [별표 1] 제16호의 ‘건축물’의 범위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만약 그 시설이 [별표 1] 제13호 가목 (2)에도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과 달리 녹지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의 설치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명시적으로 비고 제5호 다목을 두어 2층 이하의 축사시설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예외조항을 둔 입법자의 의도는 제주도 내에서 설치하는 2층 이하의 축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축산법 제2조 제8호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처리시설의 증설 역시 ‘축사시설’의 증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

---

1항 [별표 1] 제16호 및 비고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돼지 사육시설 내의 축사시설(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2층 이하로 증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1] 제16호 및 비고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회의 설명에 의하면, 골프장의 수목관리에 사용되는 액비로 제공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의 처리시설에 막여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여과 설비를 추가하여도 처리 공정이 한 단계 추가되는 것일 뿐 단위 시간당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에서 ‘용량’은 가구나 그릇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을 말한다고 하면서 ‘처분용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판단기준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역시 그 시설에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양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막여과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처리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변함이 없다면 처리용량의 증설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막여과 설비 등 일부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더라도 처리를 위해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의 변화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증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른 의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 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본배부: 외국변호사 방종식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최석림



변호사 김동근

